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1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32,353,244	3,970,597
일반회계	123,835,213	3,715,056
특별회계	8,518,031	255,541
기타특별회계	8,518,031	255,54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53,425	10,603
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049,216	31,476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4,275	4,028
주차장특별회계	6,645,734	199,372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31,513	945
기반시설특별회계	303,868	9,11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,11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